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7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‘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’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장 궐위로 인해 부단체장이 시장 권한 대행 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(안 제33조제1항제1호 바목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운영위원회 가.~마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2.~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운영위원회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